

#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17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08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·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적용범위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의용소방대 지원범위(안 제3조)
- 다. 의용소방대 지원절차(안 제4조)
- 라. 지도·감독 (안 제5조)
- 마. 지원중단(안 제6조)
- 바. 의용소방대 포상(안 제7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(연평균 5천만원 미만)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 2023. 5. 1. ~2023. 5. 22.) 결과, 의견제출 1건(평창소방서)
  - 의견 미반영 및 반영결과 통지(안전교통과-1824호(2023.6.22.))
  - 미반영 사유 : 조례안 내용 중 “평창군 의용소방대”를 “평창군 각 읍·면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”로 변경 요청한 건으로 같은 의미의 내용으로 변경 불필요
- 2) 규제심사 : 비규제사무
- 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- 5) 조례·규칙심의회 : 원안의결

##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조례는 평창군 의용소방대(이하 “의용소방대”라 한다)에 적용한다.

**제3조(지원범위)**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 각 호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
2.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비용,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비용
3. 교육, 훈련 등 의용소방대 역량강화에 필요한 비용
4.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**제4조(지원절차)**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보조금 교부 신청서
2. 사업계획서
3.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
4.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·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지도 및 감독)**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지도·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용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업무를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지도·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**제6조(지원중단)**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,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.

1.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
2.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
3.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
**제7조(포상)**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·구호 활동, 화재 예방활동 등에

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「평창군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**제8조(준용)**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법령

## □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제7조(임무)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
2. 구조·구급 업무의 보조
3.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
4. 화재예방업무의 보조
5.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16조(활동비 지원)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## □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제13조(임무) 법 제7조제5호에서 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집회,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
2.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
3.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

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6.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

가.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(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)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·감독

나. 지역의 화재예방·경계·진압·조사 및 구조·구급

### 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10조(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) ① 법 제14조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. 다만,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- [별표1] 시·군·구 자치사무 6.가,10) 민방위대 교육훈련

### □ 「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제24조(경비부담 등)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시·군 관할구역 내 의용소방대 활동을 위한 장비(「소방장비관리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비를 포함한다)·물품구입비 및 유지관리비
2. 의용소방대 소방기술·전술경연대회 소요경비
3. 시·군 관할구역 내 재난예방 활동을 위한 소방홍보 경비
4. 지역주민 대상 소방안전 교육훈련 경비
5.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
6. 그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·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안 제3조에 따른 예산 지원
  -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
  -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비용,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비용
  - 교육, 훈련 등 의용소방대 역량강화에 필요한 비용
  -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1호
 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## 3. 미첨부 사유

- 지원 비용의 규모가 연평균 5천만원 미만 및 한시적인 경비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함.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경제건설국 안전교통과장 김은규
연락처	(033) 330 - 2019